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외교부의 인력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하고, 외교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5.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을 “대외홍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외동포영사실”을 “영사안전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외동포영사실”을 “영사안전국”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재외동포영사실)”을 “(영사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24조의2 제2항 중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정책”을 “영사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이행”을 “소관 협정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9호) 중 “외국인”을 “재외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으로 한다.

2.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제56조제2항 중 “69명”을 “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무

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병무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재외동포영사실장”을 “국제안보대사”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주센다이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영사관할구역란 중 “이케다현, 이와타현”을 “아키타현, 이와테현”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72”를 “944”로 하고, 일반직 계 “241”을 “230”으로 하며, 4급 이하 “238”을 “227”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23”을 “706”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44”를 “42”로, 9등급 “9”를 “10”으로, 8등급 이하 “666”을 “650”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u>대외홍보</u> ,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 ----- ----- ----- <u>대외홍보</u> ----- ----- ----- -----.
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동북아시아국·아세안국·북미국·중남미국·유럽국·아프리카중동국· <u>재외동포영사실</u> ·국제기구국·개발협력국·국제법률국·공공문화외교국·국제경제국·양자경제외교국·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영사안전국</u>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② (생 략)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차관은 재외동포영사실
· 국제기구국 · 개발협력국 · 국
제법률국 · 공공문화외교국 · 국
제경제국 · 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소관업
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생략)

제24조의2(재외동포영사실) ① 재
외동포영사실에 실장 1명을 두
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
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신설>

2.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 ·
감독

5. 영사정책 및 제도의 수립 ·

③ ----- 영사안전국-----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
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

-----.

③ 국장-----
--.

1. 영사정책-----

2.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시행 및 총괄·조정

6. 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
에 관한 업무

7. 재외국민의 등록 및 해외이
주에 관한 업무

8.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
·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

9.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10. ~ 17. (생략)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
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
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
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9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
다.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법
무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

3. ----- 소관
협정 관리-----

<삭 제>

<삭 제>

4. 재외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5. ~ 12. (현행 제10호부터 제1
6호까지와 같음)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66명-----

--.

③ -----

----- 원
자력안전위원회-----

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병무청, 1명(5급 1명)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대변인, 감사관,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국제안보대사, 재외동포영사실장, 국장, 부대변인, 정책관등, 외교원의 경력교수, 기획부장, 교수부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4. 5. (생략)

--. -----

-----.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국제안보대사
실-----

4.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72</u>	<u>944</u>	-28
•	•	•	
•	•	•	
일반직 계	<u>241</u>	<u>230</u>	-11
4급 이하	<u>238</u>	<u>227</u>	-11
•	•	•	
외무공무원 계	<u>723</u>	<u>706</u>	-17
•	•	•	
고위공무원단	<u>44</u>	<u>42</u>	-2
•	•	•	
9등급	<u>9</u>	<u>10</u>	+1
•	•	•	
8등급 이하	<u>666</u>	<u>650</u>	-16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7